
2018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관련 업계·기관 시행 안내매뉴얼

2018. 5.

문화체육관광부 · 국세청

||| 목 차 |||

I.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개요	1
II.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기본방향	2
III.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관련 개념	3
IV. 업계·기관 시행 협조사항	5
1.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5
2. 사업자의 행정적 조치	8
3. 홍보, 안내 관련	12
4. 사후관리 관련	14
5. 카드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16
[참고1] 그간 추진경과	17
[참고2] 사업자 신청·접수 요령(서식 포함)	19
[참고3] 소득공제 가능 도서·공연 범위(사례)	22

I.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개요

□ 근거 법 및 주요내용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17.12.19 개정, 제15227호)
- (성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내용)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하 "도서·공연사용분") 추가공제(100만 원까지 추가한도 인정)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구분	기존	개정된 소득공제 내용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15%)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30%) ▪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사용분(40%) 	<좌동> <좌동> <좌동> ▪ 도서·공연사용분(30%) <신설>
공제액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전통 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 공제액=[①의 사용액 - 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전통시장·대중교통40%]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전통 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 도서·공연사용분 ▪ 공제액=[사용액 - 총급여액의 25%]×[신용 카드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30%, <u>도서· 공연사용분30%</u>, 전통시장·대중교통40%]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한도(300만 원)+ 전통시장(100만 원), 대중교통(100만 원) 한도 추가 최대한도(500만 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한도(300만 원)+ 전통시장(100만 원), 대중교통(100만 원), 도서·공연사용분(100만 원) 한도추가 최대한도 (600만 원)
비고	-	도서·공연사용분과 관련된 부분은 '18년 7월 1일부터 시행

※ 상기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Ⅱ.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기본방향

◆ 시행 수반사항 ◆

- 근로소득자가 「2018년 귀속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도서·공연티켓 판매 관련 사업자로부터 도서·공연비 자료 전자적 수집,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내 서비스 구현

□ 현행 자료수집 체계

- 기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소득공제 자료수집 체계*는 재화·용역 제공 사업자 중심으로 구축
 - * 재화(품목) 정보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 가맹점번호 등을 기준으로 특정 사업자의 특정 가맹점번호(단말기) 사용액에 대한 자료수집 및 간소화 서비스 제공
- 사업자로부터 소득공제 제공 가맹점(단말기)에서의 사용금액 등 자료수집 → 국세청(여신협회, 카드사) 등 전송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애로사항

- 개정된 법에는 공제대상이 되는 도서·공연 등 재화(품목) 중심으로 도서·공연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
- 이에 비해, 도서 및 공연티켓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자유업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에 다양한 유형의 사업자가 존재
 - 특히, 사업자가 도서·공연티켓 이외 재화를 함께 판매하는 복수 업종 형태의 경우가 많음(예: 도서+문구+음반 등, 공연티켓+전시티켓 등)
- * 사업자의 동일한 가맹점번호(단말기)에서 도서·공연티켓 뿐만 아니라 타 재화도 같이 판매·결제됨으로서 도서·공연비에 대한 자료수집 어려움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자료수집,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추진방향

- 따라서 현행체계와 애로사항을 고려, 도서·공연비에 대한 자료수집이 가능한 사업자*로부터 자료수집 등을 통한 소득공제 시행 추진
 - * 온오프라인 다양한 사업자 중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단말기)에서 도서·공연비 매출만 발생(기술적 조치) 하고,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파악된 자
- 자료수집·제출 등을 위해 한국문화정보원*이 자료수집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 * 문화기본법 제11조에 따른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임

Ⅲ.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관련 개념

□ 사업자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소득세법 제1조의2
 - 법인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개인)를 의미하며, 국세청(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음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居所(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 4. (생략)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 단일 및 복합 사업자

- (구분 기준) 소득공제 대상인 도서 또는 공연티켓만 판매하는지 여부
- (단일 사업자) 도서 또는 공연티켓, 도서와 공연티켓만 판매*하는 사업자

* △온·오프라인에서 사업자가 직접 판매, △사업자 간 위수탁 계약을 통해 판매, △판매사업자와 판매중개사업자 간 판매중개(입점) 계약을 통해 판매중개 플랫폼을 통해 판매 등

- (복합 사업자) 소득공제 대상인 도서와 타 재화, 공연티켓과 타 재화, 도서·공연티켓과 타 재화를 같이 판매하는 사업자

❖ 복합 사업자인데 영세사업자인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단일 사업자로 봄

- (도서) 연 매출 3억 미만인 영세사업자(간편장부 비치*) 중 도서 매출이 총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는 단일 사업자로 인정

- (공연) 연 매출 7천 5백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간편장부 비치*)는 단일 사업자로 인정

* 소득세법 160조, 동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가목 및 다목

❖ 이러한 경우, 사업자는 아래 증빙자료*를 근거로 단일사업자 유형으로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

- 위 영세사업자는 단일사업자와 같이 기존 가맹점 추가, 분리 등 기술적 선행조치 없이 신청·접수 가능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온라인 판매업자

-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2조(정의)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 * (예) 티켓 예매처,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방송 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 (개념) 온라인 판매업자가 도서, 공연티켓, 도서+공연티켓 또는 이외의 재화를 결합하여 직접 판매하거나, 회원사(위탁자)와 위 재화 판매와 관련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를 대행*
 - * 회원사(위탁자)는 수탁자(판매업자)에게 보통 판매 대행수수료 등을 지불
- (직접 판매) 도서·공연티켓, 이외 재화를 매입하여 온라인 판매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
- (수탁자) 온라인 판매업자로서 위탁 사업자의 판매를 대행
- (위탁자*) 도서, 공연티켓 등의 재화 판매를 의뢰하는 자
 - * (예) 뮤지컬 기획사, 대중음악(콘서트) 기획사, 공연장 운영자, 도서업자 등
- (차이점) 판매에 대한 책임소재, 매출발생 명의 등

□ 온라인 판매중개업자

-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2조(정의)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 * (예) 인터넷, 모바일 웹/앱 사이트 오픈마켓 등
- (개념) 온라인상에 재화 등을 거래·판매할 수 있는 사이버몰(가상의 영업장,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른 판매자(입점)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알선하는 자(재화를 직접 판매하지 않음)
 - * 온라인 판매중개업자와 사이버몰에 입점한 개별 사업자 간 도서, 공연티켓 또는 도서, 공연티켓과 이외 재화 판매와 관련한 중개 계약을 체결
- (입점 사업자*) 도서, 공연티켓 등을 온라인 판매중개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사업자
 - * 전자상거래법 제20조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서, 자신의 매장쇼핑몰 등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타 판매중개 플랫폼에 입점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입점 사업자로 구분
- (예) ○○홈쇼핑 회사에서는 자체 홈쇼핑사이트를 직접 운영하지만, ○마켓(오픈마켓, 통신판매중개업자) 온라인 사이트에 입점하여 판매하기도 함

IV. 업계·기관 시행준비 및 협조사항

1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 [조치할 사항]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단말기)에서 도서·공연티켓 판매 등 도서·공연비 매출만 발생하도록 할 것
 - 해당 사업자 유형별 ‘조치할 사항’을 참조하여 기술적 조치

① 오프라인 판매업자

- * 공연장, 공연기획사 및 공연단체, 서점 등 오프라인 매장(시설)에서 도서, 공연티켓 판매(단일 사업자) 또는 도서, 공연티켓과 이외 재화를 판매(복합 사업자)하는 사업자
- * 오프라인 판매와 온라인 판매(또는 판매중개)를 병행하는 사업자(예: 영풍문고, 교보문고, 인터파크 티켓 등)는 ①과 ② ~ ③에서 정한 세부사항 참조

사업자 유형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관련 조치할 사항
단일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사 직접 가맹점번호¹⁾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가맹점 추가, 분리 등 별도 조치할 사항 없음 ※ 다만, 매장(시설)이 본사 등과 동일한 가맹점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당해 매장(시설)의 결제, 매출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단말기)’에서 발생하도록 관리 요청
복합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사 직접 가맹점번호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사에 기존 매장(시설)의 가맹점번호 이외 도서·공연티켓 매출만 발생하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 추가, 분리 요청 (카드사를 통한 가맹점 추가, 분리 조치)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0;"> (예시) A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123-11-56333) 1개 가맹점번호(단말기) 보유 - 기존 사용 가맹점번호(단말기): 도서, 공연티켓 이외 재화의 결제, 매출 발생(문구, 음반, 전시티켓, MD상품 등) - 추가 가맹점번호(단말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로 관리, 도서·공연티켓 결제, 매출만 발생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제시스템 개편, 오프라인 단말기 추가 설치 등 필요 조치

1) 카드사로부터 사업자에 부여된 개별 가맹점번호를 보유, 사용하는 경우(이하 ‘카드사 직접 가맹점번호’)

② 온라인 판매업자

- * 온라인(인터넷 웹앱 사이트 등, 통신, 방송)에서 도서, 공연티켓을 직접판매(단일 사업자) 또는 도서, 공연티켓 이외 재화를 직접판매(복합 사업자), 또는 도서, 공연티켓 판매를 수탁받아 판매(단일 사업자) 또는 도서, 공연티켓과 이외 재화를 수탁받아 판매(복합 사업자)하는 사업자
- (도서 예) △단일(도서만 판매하는 서점), △복합(에스24 도서, 알라딘, 인터파크 도서 등)
 - (공연티켓 예) △단일(문화N티켓, 대학로티켓닷컴 등), △복합(인터파크 티켓, 에스24 티켓, 티켓링크, 하나투어 티켓, 클립서비스, 멜론, 나눔티켓, 세종문화회관 등)

사업자 유형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관련 조치할 사항
단일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사 직접 가맹점번호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가맹점 추가, 분리 등 별도 조치할 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G사의 대표 가맹점번호²⁾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해당 PG사가 카드사에 개설한 대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로 결제, 매출이 발생하도록 해당 PG사에 요청함과 동시에, 문체부(한국문화정보원)에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접수완료) 할 것 ○ (PG사) 카드사에 별도 개설한 PG사의 대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하위 사업자(도서, 공연티켓 판매 사이트 등)를 등록/연계하는 등 가맹점번호를 사용하도록 조치* <p>* 신청접수(접수완료) 사업자 기본정보 확인/조회 가능하도록 기능 구현(권한 부여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G사-사업자간 개별(단독) 가맹점번호³⁾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가맹점 추가, 분리 등 별도 조치할 사항 없음
복합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사 직접 가맹점번호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사에 기존 직접 가맹점번호 이외 도서·공연티켓 결제, 매출만 발생하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 추가, 분리 요청 (카드사를 통한 가맹점 추가, 분리 조치) ○ 사업자의 판매 품목(도서, 공연티켓 및 이외 재화) 등록, 관리, 분리 결제시스템 등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G사의 대표 가맹점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해당 PG사가 카드사에 개설한 대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로 결제, 매출이 발생하도록 요청하고, - 사업자의 판매 품목(도서, 공연티켓 및 이외 재화) 등록, 관리, 분리 결제시스템 등 개편 - 문체부(한국문화정보원)에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접수완료)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G사) 카드사에 PG사의 가맹점 추가, 분리 조치하고, PG사의 대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를 공동으로 사용·결제하는 하위 해당 사업자(개편된 도서, 공연티켓 판매 사이트 등)를 등록/연계하는 등 가맹점번호를 사용하도록 조치* * 신청접수(접수완료) 사업자 기본정보 확인/조회 가능하도록 기능 구현(권한 부여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G사-사업자간 '개별(단독) 가맹점번호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 ○ PG사에 기존 가맹점번호 이외 도서·공연티켓 결제, 매출만 발생하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 추가, 분리 요청 (PG사를 통한 가맹점 추가, 분리 조치) ○ 사업자의 판매 품목(도서, 공연티켓 및 이외 재화) 등록, 관리, 분리 결제시스템 등 개편

③ 온라인 판매중개업자

- 위 ② 온라인 판매업자의 조치할 사항 참조

* 앞선 기술적 조치사항 표에 적힌 "사업자의 판매 품목~ 시스템 등 개편"을 "입점 사업자의 판매 품목~ 시스템 등 개편"으로 봄

* 온라인에서 판매중개 플랫폼(인터넷 웹·앱 사이트 등)에 입점한 사업자와 구매자(고객) 간 도서, 공연티켓 판매를 중개(단일 사업자) 또는 도서, 공연티켓과 이외 재화 판매를 중개(복합 사업자)하는 사업자

- (도서분야 예) △복합(옥션/지마켓 11번가, 쿠팡, 위메프, 티몬 등)
- (공연티켓 예) △복합(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2) 사업자가 결제대행 PG사의 가맹점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이하 'PG사의 대표 가맹점번호')

3) 사업자가 결제대행 PG사를 통해 사업자에 부여된 개별(단독) 가맹점번호를 보유(사용, 결제)하고 있는 경우(이하 'PG사-사업자간 개별(단독) 가맹점번호')

2 사업자의 행정적 조치

□ [조치할 사항] 사업자 유형별로 앞선 “1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완료 후 문체부(한국문화정보원, www.culture.go.kr)에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로 신청·접수할 것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

○ (기간) 사업자는 연중 수시로 신청·접수 가능

- * 가령, 신규로 온라인 판매업을 시작한 판매업자가 '19.9월 신청·접수 가능
- 다만, '18년은 시행 초기단계임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사업자가 제도에 참여하도록 시행일('18.7.1.)에 앞서 사전 신청·접수기간 운영

- 도서·공연비 전용 가맹점 추가, 분리 및 결제시스템 개편 등 시행 준비기간이 필요한 사업자를 위해 신청 보완, 추가 신청·접수기간* 운영

- (사전 기간) '18. 6. 4(월) ~ 6.29(금)
- (보완·추가 기간) '18. 7. 2(월) ~ 7.31(화)

* 사업자 자체 보완준비, 유형④ 입점 사업자들까지 신청·접수 완료를 독려하는 기간

○ (절차 및 방법)

- 한국문화정보원 누리집(www.culture.go.kr)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접수

구분	사업자	한국문화정보원	문체부(정보원)	사업자, 국민
업무	한국문화정보원 접속, 간단 로그인 절차, 정보 입력 등	접수 검토	확정	사업자 기본정보 검색/조회
주요 내용	사업자 관련 정보 입력, 증빙서류 파일 업로드 ※ 「신청·접수 요령」 참조	입력 정보 및 증빙서류, 사업자 유형 등 대조/유형별 전용 가맹점 관련 기술적 조치사항 이행여부 검토·확인	대조 및 확인 결과 이상 없을 시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식별번호 부여	문화포털 및 문체부, 유관기관 누리집 등
처리 단계	신청·접수완료	검토중	사업자 확정	사업자 확정

- 웹사이트 내 처리단계 안내 표시*.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확정 시 사업자에게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 등 발송하여 확정되었음을 알림

* 신청·접수를 완료한 사업자는 처리단계를 한국문화정보원 누리집(www.culture.go.kr) 내 전용 웹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식별번호는 확정 시 자동 부여되며, 확정 일자는 신청·접수가 완료된 일자로 처리* 예정

* 전용 가맹점번호로 추가, 분리 및 결제시스템 개편 완료 시 온오프라인에서 바로 도서·공연비 결제가 전용 가맹점번호(단말기)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기술적 조치완료와 행정적 조치완료 일자 간 차이 최소화로 사업자, 소비자 불편 최소화

○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 주체)

온오프라인 판매품목/가맹 유형		오프라인 판매업자	온라인	
			판매업자	판매중개업자
단일	카드사 직접 가맹점번호	유형① 사업자	유형② 사업자	유형③ 사업자
	PG사 대표 가맹점번호	-	PG사 (대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 보유 주체) ※ 단, 유형② 사업자는 『1』 기술적 조치 단계에서 신청·접수 병행	PG사 (대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 보유 주체) ※ 유형③ 사업자는 『1』 기술적 조치 단계에서 신청·접수 병행
	PG사 개별(단독) 가맹점번호	-	유형② 사업자	유형③ 사업자
복합	카드사 직접 가맹점번호	유형① 사업자	유형② 사업자	유형③ 사업자
	PG사 대표 가맹점번호	-	PG사 (대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 보유 주체) ※ 단, 유형② 사업자는 『1』 기술적 조치 단계에서 시스템 개편 후 PG사보다 먼저 신청·접수	PG사 (대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 보유 주체) ※ 유형③ 사업자는 『1』 기술적 조치 단계에서 시스템 개편 후 PG사보다 먼저 신청·접수
	PG사 개별(단독) 가맹점번호	-	유형② 사업자	유형③ 사업자

◀ 온라인 판매중개 플랫폼 입점 사업자(이하 유형 ④)의 행정적 조치 ▶

* 온라인 판매중개 플랫폼(인터넷 웹·앱 사이트 등)에 입점한 사업자 중 자신의 온라인 판매 쇼핑몰* 및 판매중개 오픈마켓** 등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 사업자만 해당 (가령, 온오프라인에서 입점 사업자 자신이 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온라인 판매중개업자도 아니면서 오롯이 온라인 판매중개 플랫폼이라는 판매 채널을 활용하는 경우)

* ②사업자 유형(온라인판매업자)에 해당, 앞에서 안내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청·접수

** ③사업자 유형(온라인판매중개업자)에 해당, 앞에서 안내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청·접수

- (예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온라인 판매중개 플랫폼에 입점하여 도서, 공연티켓 판매(단일 사업자) 또는 도서, 공연티켓과 이외 재화를 판매(복합 사업자)하는 개별 사업자(소형 ◇◇서점, 문고, 공연기획사, 연극/무용/전통예술 단체 등)

- 보다 정확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대국민 서비스 하고자 함

* 정확한 도서·공연비 매출, 결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기 위함이며, 특히 현금영수증의 경우 실제 판매자(입점 사업자) 명의로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 입점한 개별 사업자로 사업자번호 등의 기본 자료수집 필요

- 판매중개 플랫폼에 개별 업체(사업자)가 입점하여 판매하는 경우, 문제 발생* 등에 대한 책임이 입점 업체에 있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의 책임소재 강화 차원에서도 유형④ 입점 사업자 신청·접수 필요

* 온라인 판매중개 플랫폼(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로 매출, 결제 발생)에서 도서·공연 티켓 이외의 타 품목 판매 등의 경우

- 개별 입점 사업자는 사전기간('18.6.4.~6.29) 및 추가·보완기간 ('18.7.2.~7.31)까지 「신청·접수」 요령에 따라 기본 정보* 입력

* 전용 가맹점번호 추가, 분리 등 기술적 조치는 불필요

- 온라인 판매중개업자는 해당 판매중개 플랫폼 입점 사업자들에게 사전 기간 및 추가보완기간에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등록 신청·접수 하도록 적극 안내할 것

□ 사업자의 변경사항 발생 시

- (변경 사유) 신청·접수 시 입력한 사업자 유형 구분 등 주요사항* 변경, 폐업 등 영업종료 시 반드시 변경 신청하여야 함

* 사업자 유형 구분 변경(단일→복합), 사업자 주요사항(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가맹점명, 가맹점번호 등)

- (절차 및 방법) 기존 신청·접수 절차와 동일

* (사업자 확정 전까지) 사업자 로그인 정보로 접속하여 변경 가능
(사업자 확정 후) 사업자 로그인 정보로 접속하여 변경 가능하며, 검토절차를 거쳐 사업자 변경 확정함

□ 확정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자료 활용

- (일반인 대상) 지역(주소), 상호·법인명 등으로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기본적 정보 검색 서비스 제공

- (결제대행사) 전용 가맹점번호 관리를 위하여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사업자의 결제대행사인 PG사, VAN사, 카드사 등에 필요 정보 검색 서비스* 제공

* 한국문화정보원 신청·접수 전용 웹 사이트 내 구현. 웹사이트 접근 및 가맹점 관리에 필요한 제한된 정보 검색 권한 부여 예정(별도 안내 예정)

- (관계기관) 국세청(여신협회 등)에 주기적으로 자료제출*

-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사업자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단말기)에서 발생한 매출을 도서·공연비로 처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구축하는데 활용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자료제출 예정

* 소득세법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에 따라,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관련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장 및 '별표4'에서 정한 자료집중기관(여신협회)에 제출해야 함

3 홍보, 안내 관련

□ 기본방향 및 목표

- 도서·공연티켓 판매(중개)·결제 관련 사업자 등이 동 소득공제 제도 시행준비 소요시간 단축 및 혼선 최소화 ⇒ 사업자 대상 홍보·안내
- 보다 쉽고, 편리하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일반 국민(고객) 대상 홍보·안내

□ 사업자 대상 홍보·안내 및 시행 지원계획

- 관련 사업자 대상으로 안내매뉴얼, Q&A 자료집 배포(5월)
 - 특히, 결제대행사(카드사, PG사, VAN사, 현금영수증사업자 등)에도 배포 및 협조요청 공문 발송
- 사업자 지원을 위한 콜센터(1688-0700) 운영(6월초~)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기술적, 행정적 조치사항 및 절차 안내 및 민원 응대

- ❖ (콜센터) '18.6월초부터 '19.3월까지 한시운영 후 국세청에 이관
 - (6~11월) 사업자 대상 안내 및 민원 응대 중점
 - (12월~'19.3월) 연말정산 시기에 맞춰 일반국민, 근로소득자 대상 안내 및 민원 응대 중점

- 도서, 공연관련 계기별 행사 활용, 사업자용 리플릿 배포(6월~)
 - * (6월) 서울국제도서전,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 등
- 온오프라인 가용 홍보매체 활용, 사업자 시행준비,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조치사항 등 안내(6월~)
- 도서·공연 관련 협회, 여신협회, PG협회, VAN협회, 온라인쇼핑협회 등 관련기관 대표 협회를 통한 업계 간담회 개최 지속(5월~)
 - 소득공제 시행 관련 업계 준비 진행사항 파악, 애로사항 청취 등

□ 확정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별 홍보·안내 협조사항

- 사업자는 매장(시설), 온라인 웹·앱 사이트 등에 사업자용 식별 표식(식별번호, 온라인 배너, 홍보포스터 등) 게시, 이용고객 안내*

* (예)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웹 사이트 또는 카테고리(공제대상 품목 등록 및 판매, 결제 가능/ 전용 가맹점번호로 관리) 개편 안내, 소득공제 가능한 도서·공연 상품,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고객이 알아야 할 사항(장바구니 분리 결제, 배송방법 등) 고지, 기타 이용방법 등 안내

해당 사업자 유형	협조 사항	비고
① (오프라인 판매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식별표식(스티커, 포스터 등)을 판매 매장(시설, 티켓창구 등) 등에 부착, 게시 ❖ 오프라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 결제 단말기에도 소득공제 전용임을 나타내는 스티커 부착 	VAN사(단말기 대리점) 협조
① (오프라인 판매업자*) *온라인 판매 병행 사업자 ② (온라인 판매업자) ③ (온라인 판매중개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도서·공연티켓 판매 및 판매중개 웹·앱 사이트 등에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임을 나타내는 사용자용 배너 이미지 게재 	
① (오프라인 판매업자*) *온라인 판매 병행 사업자 ② (온라인 판매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도서·공연티켓 판매 웹·앱 사이트에 위탁판매 상품(도서, 공연티켓)을 게재할 때 각 상품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표시하는 등 일반 고객들이 알 수 있도록 업체 자신의 실정에 맞는 방안 강구 	소득공제 가능 도서, 공연 범위 안내 (참고3)
③ (온라인 판매중개업자) ④ (입점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도서·공연티켓 판매중개 웹·앱 사이트에 입점한 사업자가 도서, 공연티켓 상품을 사이트에 등록 및 판매할 때, 입점 사업자가 도서, 공연티켓이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상품을 올리는 절차/시스템을 두거나, - 입점 사업자 등이 소득공제 가능 상품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일반고객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온라인 판매중개업자는 기존/신규 입점 사업자에 상품 등록, 판매, 일반 고객 홍보 등 안내 조치 - 실제 판매를 담당하는 입점 사업자는 자체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일반 고객 등에 안내 	소득공제 가능 도서, 공연 범위 안내 (참고3)

※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확정이 되면,

- 신청·접수 시 입력한 사업자 주소로 식별표식, 홍보물 등 발송(한국문화정보원)
-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사업자용 온라인 배너 이미지 발송(한국문화정보원)

4 사후관리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관리

- (유형 ①, ②, ③ 사업자)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되면, 즉시 결제대행사(카드사, PG사, VAN사 등)에 아래 사항*을 알림으로써,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으로 관리되도록 함

* 확정일자,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오프라인의 경우 단말기 포함) 등

- (카드사, PG사, VAN사 등 결제대행사) 단일 사업자의 경우 △기존 가맹점번호를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으로 관리*하고,

* 카드사의 직접 가맹점번호, PG사-사업자간 개별(단독) 가맹점번호가 이에 해당하며, 확정된 사업자의 기존 가맹점번호에서 발생한 매출은 도서·공연비로 관리

- 복합 사업자의 경우 △분리, 추가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에서 발생한 매출을 도서·공연비로 관리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에서의 상품 판매 관련

- (온오프라인 판매업자) 도서·공연비 전용으로 관리되는 가맹점(가맹점 번호, 가맹점 단말기, 인터넷 웹사이트 등)에서 타 재화 매출, 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직접 판매 및 대행 판매하고 있는 상품 등의 판매, 결제 등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수시/정기 점검 실시

- 판매 대행하고 있는 위탁사(회원사)에 소득공제 가능한 도서, 공연 티켓 범위 및 소득공제 상품 등록 등 안내할 것

- (온라인 판매중개업자) 도서·공연비 전용 가맹점으로 관리되는 가맹점(인터넷 웹사이트 등)에서 타 재화 매출, 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점 사업자 지속 안내 등 관리

* (예) 입점 사업자가 기존에 책만 판매하여, 판매중개업자의 도서·공연비 전용 사이트 입점처리 하였으나, 고의로 유아용품, 공연 기념품 등을 실제 판매함

□ 모니터링 등 점검 실시

- (사업자 공통) 정기 또는 수시로 자신이 판매(또는 판매중개)하는 도서, 공연티켓이 소득공제가 가능한 도서, 공연티켓 상품인지 점검
 - 사업자는 소득공제 가능하지 않은 상품을 매장(시설),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거나 인지하는 즉시 시정조치*
- * (예)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단말기, 온라인 전용 장바구니 등에서 매출, 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국세청) 8월이후 문체부, 온오프라인 사업자, 결제대행사 등과 협력하여 모니터링 및 사업자 점검* 등 행정지도 예정
 - 미신청 사업자 신청 독려, 도서·공연비 전용 가맹점(단말기, 웹사이트 등) 판매, 매출 관리실태 등 점검

* 소득세법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제5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증명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국세청장은 사업자 대상으로 행정지도 할 수 있음

- 점검 후 전용 가맹점의 도서·공연비 매출에 대한 오류정정 등 시정이 필요할 경우 후속방안을 마련, 관계기관에 별도 안내할 계획

* 조세범처벌법 제9조(성실신고 방해 행위) 제②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신고의 수정을 포함한다. 이하 "신고"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 또는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 사업자가 소득공제 가능 품목이 아닌 재화를 고의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에서 판매함으로써 납세의무자(근로소득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카드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추가, 분리

- (카드사, VAN사, PG사 등) 온오프라인 사업자 등으로부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을 위해 가맹점 추가, 분리 요청 시 적극 협조
 - 추가 가맹점명, 번호 부여 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 특히, 전용 가맹점번호 결제 전표(영수증)에 도서·공연비 가맹점이라는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조치
- * 결제 전표 내 위치 및 표시 내용 등 상세사항은 카드사와 결제대행사 간 결정
- 추가된 전용 가맹점번호로 발생한 매출 정보가 카드사에 전송되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자료수집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
- 근로소득자에게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위한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가맹점 추가, 분리 등이 추진되는 만큼,
 - 추가 가맹 처리 시 사업자의 기존 가맹점 카드결제 수수료율과 동일 또는 이하 수준 적용

□ 현금영수증·가맹점 결제내역 구분 및 자료제출

- (현금영수증사업자)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확정 사업자 가맹점에서 발생한 도서·공연비 현금결제 내역을 구분 → 국세청 전송
 - 개정된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제2018-06호) 제3조 제3항에 따라 도서·공연비에 해당하는 경우 “C”로 표시

고시 제3조(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 및 제출)

-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통보받은 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 아래 전산제출양식에 의하여 국세청장과 사전협의하여 통보하되 당일의 결제내역은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전송하여야 한다.

18. 대중교통 및 도서·공연비여부(1바이트)-대중교통 이용내역일 경우 “Y”로 표시,
도서·공연비 이용내역일 경우 “C”로 표시, 둘 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빈칸)으로 표시

- 다만, 도서·공연티켓만 판매하는 단일사업자는 별도로 구분하여 전송하지 않아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일자부터 연말까지 전체 거래내역을 국세청에서 도서·공연비로 분류할 예정임

- 도서·공연 소득공제 도입 관련 협의('17.7월, 3회/기재부, 문체부, 국세청)
- '도서·공연비, 연 추가 100만원 소득공제 신설' 발표('17.8월/기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정부 개정안 국회 제출('17.9월 / 기재부)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17.12월, 국회)
- 도서·공연 소득공제 준비추진단(TF) 구성·운영 ('17.8~12월, 7회)
 - * 도서·공연 사용금액 구분된 자료수집 방안 쟁점 논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홈택스) 구현 등을 위한 도서·공연, 카드사, VAN사 등 업계 의견수렴, 국세청 등과 회의
- 문체부·국세청 도서·공연비 구분 자료수집 방안 검토('18.1월말~2월)
- 문체부·국세청 등 관계기관 제1차 회의('18.2.27)

- (참석) 문체부, 출판진흥원, 예술경영센터, 문화정보원, 국세청(원천세과, 전자세원과, 홈택스2팀)
- (논의) 결제정보 분리 자료전송·수집 방안,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현황 파악 및 국세청 자료 제출, 콜센터 설치·운영 관련

- 문체부 주관, 여신협회·주요카드사 의견수렴 회의('18.3.6)
- 문체부·국세청 등 관계기관 제2차 회의('18.3.8)

- (참석) 문체부, 출판진흥원, 예술경영센터, 문화정보원, 국세청, 여신협회, 카드사 등
- (논의/쟁점) 도서·공연비 결제정보 분리, 전자적 자료수집 관련
 - (카드사) 도서·공연 품목에 해당하는지 가/부 여부, 품목별 결제정보 전송·수집 불가
 - (추진방향) 현행 신용카드 자료수집 관리체계 하에서 사업자(가맹점) 결제단계에서 도서·공연비에 해당하는지가 구분되도록,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 추가(분리), 단말기 추가 및 공제대상 사업자 파악 등 현실적 접근 필요
 - (시행준비 행정적 필요사항) 도서와 공연티켓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 소득공제 제공 가능 사업자 사전접수 및 확정 절차 필요
 - ※ '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도서·공연입장권을 구입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 등 사업자 중심 소득공제 법적근거 마련 필요
 - ⇒ 조특법 개정 추진(국세청/문체부 개정 기재부에 공동건의)

- 문체부 주관, 도서·공연 업계 간담회 개최('18.3.13, 3.15, 2회)

○ 문체부·국세청 등 관계기관 제3차 회의(18.3.16)

- (참석) 문체부, 출판진흥원, 예술경영센터, 문화정보원, 국세청, VAN협회, 카드사, VAN사, 및 도서·공연 업계 주요 사업자(인터파크, 에스24, 온오프라인 서점 등)
- (논의/쟁점) 제1~2차 회의내용 공유 및 추진방향, 시행준비 필요사항 논의, 업계 의견수렴
 - 복합 사업자 7.1 시행일전 가맹 추가, 시스템 개편 어려움 피력
 - 업계 시스템 개편 시까지 소득공제 예정 사업자에 대한 안내, 홍보 필요
 - 업계 가맹 추가, 시스템 개편 등 이슈가 있으므로 매뉴얼 마련 필요 및 도서·공연업계 사업자 유형별 세부적 접근방법 필요

○ 문체부·국세청 등 관계기관 제4~7차 회의(18.3.18, 3.23, 4.5, 4.17) 및 문체부·국세청 시행준비 우선 조치*

- (제4~7차 회의) 사업자 유형별 구분 및 이에 따른 사업자 가맹추가, 신청/접수 등 추진방향 확정, 신청·접수 요령(정보값 layout) 논의, 업계 시행준비 관련 매뉴얼 등 기술적 사항 보완사항 설명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 * (콜센터) 한국문화정보원 콜센터 개시 준비(4~5월 조달발주 및 계약, '18.5월말 준비, 6월초 서비스 개시⇒ '19.3월까지 한시적 운영 후 국세청 이관)
(사업자 신청/접수) 한국문화정보원에서 도서 및 공연 사업자 신청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개발 및 준비(4월 개발착수, 5월말 기술적 점검, 6월초 개시)
(사업자용 안내매뉴얼) 매뉴얼 초안 업계 회람('18.4.11~), 보완('18.4~5월)
(조특법 개정·보완) 개정안 기재부 제출 및 개정 협의('18.4월~, 2회)

○ 금융위·여신협회·카드사 등에 시행준비 협조요청(18.4.18, 공문 발송)

- *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을 위한 가맹 추가 관련(가맹점 분리/추가, 단말기 설치 등)
△기존 가맹 수수료율 적용, △가맹 추가 승인 조속 처리 등

○ 문체부 주관, 도서·공연계 대상 사업자 설명회 및 간담회(18.4월말~5월초, 총 7회)

○ 문체부·국세청 공동 결제대행사 대상 설명회 개최(18.5.4)

- (참석) 문체부, 문화정보원, 국세청, 주요 PG사, 카드사, 간편결제 사업자 등
- (논의) PG사 대표 가맹점 문제, 오픈마켓 및 입점사업자 관련 별도 조치/안내 필요

○ 문체부 주관, 온라인쇼핑몰·오픈마켓 등 대상 설명회 개최(18.5.15)

- * 온라인 판매업자 및 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사전조치 등 안내 필요. PG사 대표 가맹점의 하위 물 연계, 오픈마켓 내 입점 사업자 연계 관련 문제 논의 및 의견수렴

○ 문체부·국세청 등 관계기관 제8차 회의(18.5.21)

- * 그간 업계 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해 나온 의견 반영한 수정 안내매뉴얼(안) 논의

❖ ① 오프라인 판매업자, ② 온라인 판매업자, ③ 온라인 판매중개업자 일 경우

사업자 유형 구분	온오프 구분	<input type="checkbox"/> 오프라인 <input type="checkbox"/> 온라인 (온오프라인 복수 선택 가능)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온라인 선택 시 <input type="checkbox"/> 판매업자 <input type="checkbox"/> 판매중개업자 <input type="checkbox"/> 판매중개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 (복수 선택 가능)
	판매 품목 구분	<input type="checkbox"/> 도서 <input type="checkbox"/> 공연티켓 (단일 사업자 : 도서, 공연티켓 또는 도서와 공연티켓 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도서+ 이외 재화, 공연티켓 + 이외 재화, 도서와 공연티켓+ 이외 재화 (복합 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예) 123-11-11111 <사업자번호 중복 체크> ※ 국세청(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상호·법인명	(예) 문화서적, 문화티켓, 누리 온라인 쇼핑몰, 아트티켓 오픈마켓 등	
대표자명	(예) 홍길동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 정보 (도서·공연티켓 매출, 결제만 발생하는 가맹점 정보)	가맹점명	(예) 국세서점 ※ 직접 가맹점번호 보유 사용 시 (예) 케이지이니시스(주) ※ PG사 대표 가맹점번호 사용시 (예) 컬처티켓-카카오페이 ※ PG사 개별(단독) 가맹점번호 보유 사용시
	카드사명	(예) 비씨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엘지카드 등 ※ 전용 가맹점번호 추가, 분리한 카드사명 기재(2개 이상 복수 기재 가능) ※ 단, 온라인 사업자로서 결제대행사 PG사 대표 가맹점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작성 불필요 (PG사가 별도로 등록, 입력)
	카드사별 가맹점 번호	(예) 167716252, 16759805 등 ※ 카드사별 추가, 분리한 전용 가맹점번호 기재(복수 기재 가능) ※ 단, 온라인 사업자로서 결제대행사 PG사 대표 가맹점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작성 불필요 (PG사가 별도로 등록, 입력)
주소	※ 사업자 등록완료 후 등록사업자용 식별표식 등을 배송 받을 수 있는 주소 입력	
업무담당자 정보 (사업자 등록 관련 연락 가능한 업무담당자 정보)	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파일첨부	(단일/복합 공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복합 추가) 복합 사업자는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추가, 분리 관련 가맹점 가입 계약서 사본(단, 대표 PG사 대표 가맹점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예외)	

※ (유의사항) 유형①~③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중개 플랫폼에도 입점하였다면 사업자 유형 구분 란에 있는 입점 사업자 항목도 선택할 것(④입점 사업자용 페이지 신청할 필요 없음)

❖ ② 및 ③ 사업자에게 PG사 대표 가맹점번호를 사용하게 하는 PG사 (PG사 신청, 접수 전용 페이지)

사업자등록번호	(예) 123-11-11111 <사업자번호 중복 체크> ※ 국세청(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상호·법인명	(예) 엘지 유플러스, 케이지이니스 등	
대표자명	(예) 홍길동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 정보 (도서·공연티켓 매출, 결제만 발생하는 가맹점 정보)	가맹점명	(예) 케이지이니스(주)
	카드사명	(예) 비씨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엘지카드 등 ※ 전용 가맹점번호 추가, 분리한 카드사명 기재(2개 이상 복수 기재 가능)
	카드사별 가맹점 번호	(예) 167716252, 16759805 등 ※ 카드사별 추가, 분리한 전용 가맹점번호 기재(복수 기재 가능)
주소	※ 사업자 등록완료 후 등록사업자용 식별표식 등을 배송 받을 수 있는 주소 입력	
업무담당자 정보 (사업자 등록 관련 연락 가능한 업무담당자 정보)	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전자우편 주소	
파일첨부	(단일/복합 공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PG사의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추가, 분리 관련 카드사별 가맹점 가입 계약서 사본, PG사가 온라인 사업자에게 대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사용하도록 한 것과 관련한 관련서류 사본	

❖ ④ 온라인 판매중개업자의 플랫폼 입점 사업자
[입점 사업자 신청, 접수 전용 페이지]

사업자 유형 구분		
	판매 품목 구분	<input type="checkbox"/> 도서 <input type="checkbox"/> 공연티켓 (단일 사업자 : 도서, 공연티켓 또는 도서와 공연티켓 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도서+ 이외 재화, 공연티켓 + 이외 재화, 도서와 공연티켓+ 이외 재화 (복합 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예) 123-11-11111 <사업자번호 중복 체크> ※ 국세청(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상호·법인명	(예) 행복서점, 연극 공연단체, 공연드림 소극장(공연장) 등	
대표자명	(예) 홍길동	
현금영수증사업자명	(예) 한국정보통신(주) 등	
입점한 온라인 판매중개 플랫폼	※ 복수로 기재 가능	
주소	※ 사업자 등록완료 후 등록사업자용 식별표식, 홍보물 등을 배송 받을 수 있는 주소 입력	
업무담당자 정보 (사업자 등록 관련 연락 가능한 업무담당자 정보)	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파일첨부	(단일/복합 공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1 도서의 범위

□ 법적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간행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제3호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간행물의 기록 사항) 출판법 제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출판사
2. 도서관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다만,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로 갈음할 수 있다.

□ 도서의 범위

-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의 경우 ECN** 포함)이 기록된 간행물로 판매되는 간행물

* ISBN :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서관법 제21조에 의거 발급하는 국제표준도서번호로 978, 979로 시작하며 총 13자리로 구성, 통상적으로 부가기호 5자리가 추가됨

** ECN :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문체부 고시 2017-38호, '18.1.1.)에 의거 콘텐츠식별체계(UCI) 등록관리기관으로 지정한 (사)한국전자출판협회에서 발급하는 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 ▲ 종이책(학술서, 만화, 학습참고서 포함), ▲ 전자책(오디오북, 웹툰, 웹소설 포함), ▲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 ▲ 중고책(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간행물로 판매자에 의해 다시 판매되는 도서)

* 도서 구매에 수반되는 배송료 등은 도서구입비에 포함

- (제외) ▲ 잡지 등 정기 간행물법에 의한 간행물(ISSN(977-)이 기록된 주월·계간지 등 잡지),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간행물(반국가·반사회·반윤리적 내용)로 결정되어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간행물, ▲ 판매가 아닌 대여되는 간행물

2 공연 및 공연티켓의 범위

□ 법적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 공연법 제2조 제1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1.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극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附隨)한 공연은 제외한다.

□ 공연 및 공연티켓의 범위

- (공연) 공연법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극예 등
- 이밖에 뮤지컬, 대중음악 콘서트, 오페라, 발레, 마술, 마당극, 아동극 등도 공연
- (공연티켓*) 위와 같은 공연을 보기 위한 관람권, 입장권 등의 재화 형태로 판매되는 것

* 동일한 공연(상품)의 관람을 위한 공연티켓 내 여러 티켓 권종이 존재

* 공연티켓 예매/취소 수수료, 배송료 등은 공연티켓 비용에 포함

※ 공연티켓 범위 예시

구분(사례 및 주요내용)	공연티켓
<p>① 지역대표공연예술제(축제) 등 공연예술로 특화된 축제/행사 기간 중 축제/행사의 공식·부대 프로그램으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p> <p>- △공연명, 공연장소, 공연시간, 출연자(아티스트) 등이 명시적으로 표기되어 있고, △독립된 공연티켓의 형태로 가격이 책정되어 판매</p> <p>(예: 평창대관령음악제 기간 중 000 앙상블 공연, 통영국제음악제 △△△ 실내악 콘서트, 페퍼00페스티벌, 인디음악축제 등)</p>	포함
<p>② 온라인 상 판매되는 공연티켓의 종류 중 공연티켓에 부가상품, 서비스 포함된 경우</p> <p>- 공연티켓의 하위 권종의 형태로 판매되는 공연티켓(티켓에 공연관람 이외 부가상품, 서비스 포함/ 예시 : 공연+프로그램북, 공연+CD, DVD, 공연+음료 등)가 온라인 상에서 판매될 때, 아래 요건 충족시 공연티켓 범위에 포함</p> <p>△ 상기 공연티켓이 동일한 공연의 관람을 위한 공연티켓의 하위 권종으로 판매되고 있고, △ 부가상품, 서비스가 불포함된 공연 관람만을 위한 공연티켓 권종도 함께 존재한다면 공연관람이 주 목적이므로 소득공제 가능 공연티켓 범위에 포함됨 (부가상품, 서비스가 없더라도 공연티켓 자체가 성립)</p> <p>※ (예시) COOO뮤지컬 공연의 공연티켓 내 여러 개의 공연티켓 권종 판매* 하는 경우, 부가상품인 프로그램북 제공이 포함된 공연티켓은 소득공제 가능 공연티켓에 포함</p>	포함

구분(사례 및 주요내용)	공연티켓
* (공연티켓 권중) 요일별 공연티켓, 할인 공연티켓, R/S/A/B 등 좌석위치별 공연티켓, 특별 프로모션 공연티켓(당해 공연 프로그램북 제공 포함))등	
<p>③ 호텔·관광 패키지(복합) 상품 내 공연프로그램이 포함된 입장권, 티켓</p> <p>- 호텔 숙박, 지역 관광코스 여행, 식음료 등과 공연프로그램이 결합되어 입장권, 티켓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 공연 관람을 위한 공연티켓의 하위 권종으로 존재하지 않고 별도 입장권, 티켓 상품으로 판매되거나, 상기 패키지(복합) 상품 티켓, 입장권 판매 또는 결제가 호텔 등의 결제시스템을 통해 발생하여 소득공제 가능 공연티켓 범위에서 제외</p> <p>(예: OO호텔 야외 써머페스티벌, △△크루즈 디너쇼, 가수 이@@ 디너쇼 등)</p>	제외
<p>④ 문화관광축제 입장권, 일반적인 축제/행사 티켓, 관람권 등</p> <p>- 기존 티켓 예매처 웹사이트 등에서 주로 전시/행사 등의 메뉴(카테고리)에 등록되어 판매되는 티켓, 상품 등이 대부분이 위 경우에 해당</p> <p>(예: oo음식축제 입장권, oo꽃박람회 입장권, 초대권 등)</p>	제외
<p>⑤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공연 녹화영상 및 실황 중계물 관람권(티켓)</p> <p>- 영화관에서 영화티켓의 한 형태로 판매, 결제되고 있어 제외</p> <p>(예: △△박스, OO시네마 신년음악회 실황 Live, 오페라 상영, 해외 페스티벌 등)</p>	제외
<p>⑥ 온라인 중고티켓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서 구입한 중고티켓</p> <p>- 이번 소득공제 가능 공연티켓 범위에서 중고티켓 거래사이트 등에서 거래, 판매되는 중고티켓, 개인 간 거래되는 중고 공연티켓 등은 제외</p> <p>- 이는 중고 공연티켓의 경우 판매 가격이 명확하지 않으며, 책정된 가격이 과도하거나 가격이 비공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그 판매가격을 알기 어려움을 고려한 것임</p> <p>- 특히, 사회 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가격을 책정한 중고 공연티켓 거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티켓 다량 구매 후 고액으로 되파는 행위 등 불공정한 거래가 혼재되어 있고, 여러 차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 소득공제 가능 공연티켓 범위에 불포함</p>	제외

※ 다만, 소득공제 가능 도서 및 공연티켓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 증빙 등을 통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도서, 공연티켓 등의 판매, 결제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단말기)에서 발생할 것,
- 국세청(여신협회 등)에서 문체부(한국문화정보원)을 통해 확정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의 가맹점번호 등을 기준으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도서공연비로 처리, 확정할 것